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발전과정\*

이 정 호\*\*

김 완 희\*\*\*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회계변혁을 경험하였다.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IMF와 세계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안을 수용하여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를 출범시켰으며, 결합재무제표, 분기재무보고,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이후 미국의 대형 회계부정사건과 관련된 회계개혁법을 수용하여 CEO의 재무제표인증, 감사인의 주기적 교체, 비감사업무의 제한 등의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회계개혁방안들의 추진 과정과 의미를 정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회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의 제도에 대하여 단순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좇는다는 입장에서 신속한 도입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철저히 고려하여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권 및 정책당국 스스로 회계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나치게 처벌 및 규제 위주의 개혁안을 지양하고 규제의 실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 I. 서 론

회계는 경제의 거울이다. 따라서 경제가 원활히 작동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회계는 경제의 실상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편, 회계도 경제시스템의 일 구성인자이므로 회계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시장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주체 중 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다. 1920년 후반 미국 대공황 당시 기업들의 방만한 회계처리에 따른 경영상황왜곡 및 투자자들의 호도가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던 역사적 사실은 회계의 역기능이 초래한 경제 불안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획기적인 발전은 위기극복과정의 산물이다. 증권거래법의 제정과 SEC의 출범을 필두로 한 투자자 보호 정책은 미국의 회계제도를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엔론사의 파산으로 시작된 유수 기업들의 연이은 분식회계파동은 Sarbanes-Oxley법의 제정과 PCAOB의 설립 등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였다. 효율성을 무시한 규모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정경유착 및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재벌의 비호에서 비롯된 건전한 지배구조의 결여 및 경영의 불투명성, 금융제도의 허약성 등 외환위기의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었다. 위기극복을 위하여 정부는 금융, 기업, 공공, 노동시장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개혁의 기초는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었다. 즉, 외환위기를 가져오게 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정부주도형 경제체제에 있었다는 것이며 이의 근본적 치유책을 시장경제로의 전환에서 찾은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기초는 9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주장되어 온 세계 경제의 재편 패러다임 즉, 시장경제기능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투명성 부재 및 신뢰성 저하에 회계의 불투명성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정부는 전면적인 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 국제적인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민간회계기준제정기관의 설립,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재벌기업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분기재무보고제도의 도입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이 3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실행되었다. 외환유동성 위기가 해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제도개혁이 정착되기도 전에 발생한 SK글로벌 등의 분식회계사건은 미국을 필두로 한 전세계적인 분식회계 파동과 맞물리면서 최고경영자의 재무제표 인증 및 처벌 강화,

외부감사인의 강제 교체, 회계법인의 피감회사에 대한 컨설팅업무 제한 등 Sarbanes-Oxley법의 주요 사항을 수용하는 추가적인 회계제도개혁으로 이어졌다.

본고는 IMF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발전과정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발전과정 및 방향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므로 본고는 성급한 판단과 해석을 가급적 지양하고 이 시기에 있어서의 회계제도의 발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회계제도 변화 양상의 복잡다기화 및 변화 속도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사료를 정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회계발전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IMF 외환위기 이후의 회계개혁을 시기별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첫 단계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이루어진 회계개혁으로 1997년말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 외환자금을 공여해 준 IMF와 세계은행의 회계개혁 요구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후속 조치 및 그 의미를 중심으로 제2장에서 다루었다. 둘째 단계는 미국의 회계개혁 및 SK글로벌 등 대기업의 회계분식에 따른 추가적 회계개혁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의 회계개혁으로 제3장에서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회계개혁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회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II.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회계개혁

이 시기에 우리나라 회계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IMF와 세계은행이 제시한 경제개혁프로그램이다.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자금을 지원한 양 기관은 자금지원에 따른 요구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청하였는데 세부실천사항으로 경제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제정 및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회계개혁프로그램이 포함되었고 우리 정부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이행하였다.

이러한 이행사항의 실행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강제적으로 단행되었다는 점, 자금지원규모에 비하여 경제개혁 요구의 범위 및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

었다는 점, 정해진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비판적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의향서의 작성에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외환위기라는 위기 상황을 활용하여 회계의 선진화과제를 비롯한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였다는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1. 외환자금 공여 기관의 회계개혁 요청

### 1) IMF의 회계개혁 요청

IMF는 1997년 12월에서 1999년 5월까지 19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1999년 9월 18일 135억, 2001년 8월 23일 60억을 상환하여 최종 상환기일인 2004년에 앞서 조기 상환하는 경제회복의 성과를 거두었다.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정부와 IMF는 1997년 12월 3일 1차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00년 6월 12일까지 9차례에 걸친 의향서를 작성하였고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그 이행여부를 보고하였다.<sup>1)</sup>

의향서에 포함된 회계제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제적인 수준의 회계기준 및 공시기준 제정
- ② 국제적인 수준의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
- ③ 대규모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의무화
- ④ 반기재무제표를 감사필로 하며 분기재무제표를 작성의무화.

9차례의 의향서에 포함된 회계관련 이행사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의향서는 자금지원의 기대효과 및 달성목표에 대한 개략적 기술과 경제프로그램각서(memorandum on economic program), 그리고 부록인 개혁의 성과, 원화보유현황, 외환보유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향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프로그램각서로서 거시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자본자유화, 무역자유화, 노동시장개혁 및 사회복지프로그램, 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 등으로 대별하고 이들 영역에 대하여 소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실천항목과 달성시기를 정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IMF 자금지원 의향서의 회계관련 이행조건

의향서	회계관련 이행조건
1차의향서 (97. 12. 3)	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 - 국제기준(바젤협약)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회계기준 마련 -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인 회계법인이 감사 기업투명성 제고 - 독립적인 외부감사, 철저한 기업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 적용
4차의향서 (1998. 2. 7)	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 -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시가회계주의 도입(1998. 8. 15) - 시중은행 및 중금사에 대한 적정한 대손충당비율 검토(1998. 8. 15) - 특수은행과 개발은행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체결(1998. 11. 15) 기업투명성 제고 -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국제적 기준에 일치 - 관계회사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공표 -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제고를 위해 상장회사와 재벌에 대해 내부감사, 주주(가능한 경우 사외이사 및 채권자대표 포함)로 구성되는 외부감사인 선정위원회 설치의 무화
5차의향서 (1998. 5. 2)	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 - 상품유가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 시가평가도입(1999. 1) - 재경부, 금감위 및 관련규제기관은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 -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이 IAS30의 최저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 기업투명성 제고 - 국제기준에 따라 외부감사필 반기회계보고서 공표(1998. 8말) - 외부감사미필 분기별 회계보고서 공표(2000. 1. 1)
6차의향서 (1998. 11. 13)	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 - 재경부, 금감위 및 관련규제기관은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 - 국제적 수준의 회계, 감사, 공시기준마련(1999. 1) - 1999 회계연도부터 모든 외감법인은 개정된 회계기준적용 재무제표작성 -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이 IAS30의 최저기준의 부합여부 감독(1998. 11) - IFAC의 국제감사기준 적용여부 감독(1999. 3)
7차의향서 (1999. 3. 10)	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 - US GAAP에 합치하는 금융업종회계처리기준 마련(1999. 4. 1) 기업투명성 제고 - 1999회계연도부터 전자공시제도 구축(1999 상반기)
8차의향서 (1999. 11. 24)	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 - US GAAP에 합치하는 채권채무재조정회계기준 발효 (1999. 9. 30)
9차의향서 (2000. 6. 12)	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 - 한국회계기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IAS)에 합치되는 회계기준마련

## 2) 세계은행의 회계개혁 요청

세계은행(World Bank)은 97년 12월 23일 경제재건차관(ERL) 30억 불, 1998년 3월 27일 1차 구조조정차관(SAL, Structural Adjustment Loan) 20억 달러, 1999년 5월 11일 2차 구조조정차관(SAL II) 20억 달러를 지원했다. IMF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도 회계제도를 포함한 경제프로그램의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우선 1차 구조조정차관의 도입 시 협의된 회계제도의 주요 개혁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은행과 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 ② 회계기준제정 및 감독 제도를 정비
- ③ 외감법 및 관련규정을 보완
- ④ 1999회계연도부터 모든 외감법인들은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 준수
- ⑤ 1999회계연도부터 예외없이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

IMF가 금융업의 회계선진화에 중점을 둔 반면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회계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IMF의 경우 회계개혁의 주체로 재정부와 금감위 등 정부의 감독기관을 우선 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계은행에서는 민간기구인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독립적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SAL II는 SAL I의 협의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회계기준제정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감독제도 정비
- ② 민간 전문가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정부로 독립성을 유지
- ③ 1999년 회계연도부터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할 국제적 수준의 회계 및 감사기준의 제정
- ④ 이사회와 재무관리·감독기능을 개선하고 회사내부감사기능의 유효성을 제고
- ⑤ 상장기업은 2000년 사업연도부터 국제적 수준의 분기재무제표를 작성·공시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2차 차관 인출시기인 1998년 12월 5일까지는 관련 법

령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SAL II의 이행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세계은행과의 기업·금융구조조정협회는 2000년 2월 29일 종료되었는데, 종료시점에서 세계은행은 한국의 금융부문이 회복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동 협회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고, 회계제도의 개선, 경쟁정책의 확대 등 개혁내용을 대부분 이행

<표 2> IBRD 2차구조조정차관 정책협약사항(SAL II Policy Matrix)

목 표	1차 차관인출시까지 이행계획 (1998. 10. 31)	2차 차관인출시까지 이행계획 (1998. 12. 15)
회계기준제정 및 감사인에 대한 규제 및 감독관련 제도의 구조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SK FORCE 구성 발족</li> <li>① 회계 및 감사전문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정부기구의 역할을 합리화</li> <li>② 국제적 수준의 자율규제기구가 되도록 KICPA 역할강화</li> <li>③ 1999년 6월까지 독립된 회계기준제정기구 발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실무업계에 대한 모든 규제조치를 철폐하고, 적절한 규제기능과 책임을 증권선물위원회에 통합시킴</li> <li>- 독립적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설립을 위한 실행계획의 일정 확정 및 공표</li> <li>-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국회제출</li> </ul>
공인회계사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정부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감사업무의 지도·감독을 주도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SK FORCE 구성 발족</li> <li>① 공인회계사회의 회칙, 조직 및 기능의 강화를 위한 검토</li> <li>② 감사보수, 감사수입한도제도, 감사인 평가제도, 3년 계속감사제도, 감사인 지정제도 등 규제법령의 적정성 평가</li> <li>③ 감사기준제정,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감독(교육·감리), 및 징계제도 등의 운용에 있어 공인회계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SK FORCE의 검토완료 및 실행계획안 일정표 채택</li> <li>- 개정규칙 및 규정의 발효</li> <li>- 개혁수용을 위한 관련개정법률안의 국회제출</li> </ul>
199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국제적 수준의 회계 및 감사기준의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수준의 회계 및 감사기준의 채택 공포(금감위)</li> <li>- 1999회계연도부터 상기 기준을 외감법인 및 금융기관에 적용하도록 입법화</li> <li>- 금융상품, 리스회계, 자산분류, 채권채무재조정, 자산재평가, 외화환산, 수익의 인식, 공시, 결합채무제표기준 등 포함</li> </ul>

〈표 2〉 계속

목 표	1차 차관인출시까지 이행계획 (1998. 10. 31)	2차 차관인출시까지 이행계획 (1998. 12. 15)
이사회와 재무관리·감독기능을 개선하고 회사내부감사기능의 유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종료</li> <li>- 상장회사와 금융기관의 내부감사기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 종료</li> <li>- TASK FORCE 구성발족</li> <li>①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인선임위원회가 되도록 기능의 합리화를 위한 검토</li> <li>②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작성</li> <li>③ 관련법령 및 규정의 개정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안 완결</li> <li>- 상장법인의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위한 입법화 실행계획의 채택 및 공표</li> <li>-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초안 작성</li> </ul>
상장회사 재무보고의 빈도 및 질적 향상		- 2000년부터 상장회사에 대한 분기재무제표의 공시요구

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2)</sup>

## 2. 정부의 개혁정책

정부 역시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구조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기업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소위 [5+3] 원칙을 제시하고 시장경제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5+3] 원칙은 '98. 1. 13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5개 그룹 대표간에 합의된 기업구조개혁 5대 과제와 '99. 8. 15 제5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천명된 3대 과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의 초기 정책의 주요 기조를 이루었다.

2)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0. 3. 2

〈표 3〉 5대 원칙의 주요 내용

원칙	주요내용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대 집단 결합채무제표 도입('99회계년도부터 시행)</li> <li>• 회계공시 강화,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li> </ul>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채무보증 금지, 2000. 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공정거래법 개정</li> </ul>
③ 재무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한 5대 그룹 200% 미만 부채비율 달성 유도</li> <li>• 6대 이하 6대그룹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을 통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li> <li>• 불건전비용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부과 등</li> </ul>
④ 핵심역량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내부거래 차단</li> <li>• 계열분리요건 완화(매출의존도 삭제)</li> <li>• 통합법인 설립 등 구조조정과정의 세부담 완화 등</li> <li>• 경제력 집중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li> </ul>
⑤ 기업경영의 책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주주권 강화</li> <li>•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li> <li>• 사실상 이사제 도입 및 30대 집단 동일인의 이사 등재 유도 등</li> </ul>

5대 원칙의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이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개선 ④ 핵심역량의 집중 ⑤ 기업경영의 책임성 제고 등으로 압축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재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회계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재벌개혁의 최우선 목표를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에 두었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회계관련지표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재벌의 선단식 경영의 실상을 공개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결합채무제표의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회계공시 강화,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외에 재벌의 방만한 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적정부채비율의 유지, 한계기업의 정리를 통한 핵심역량의 집중 등이 약속되었으며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논의되었다.

### 3. 회계개혁의 성과

#### 1) 회계개혁의 기초

이 시기 회계개혁의 청사진은 정부와 IMF 및 세계은행 등의 회계개혁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1998년 7월 8일 발표한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실행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실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회계기준의 내용이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흡하고 제정과정에서 정보 생산자인 회사의 입장이나 산업육성정책을

〈표 4〉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실행계획

개혁분야	개혁안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으로 전면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회계개념체계 설정</li> <li>- 범조문형식을 설명서형식으로 전환</li> </ul> </li> <li>• 모든 업종별회계기준 제정의 일관성 확보</li> <li>• 회계기준제정기구의 독립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제고</li> <li>- 중장기적으로 기준 제정권의 민간위양 검토</li> </ul> </li> </ul>
분식회계처리 동기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환경의 지속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심사능력 향상</li> <li>- 세무회계와의 차이 조정</li> </ul> </li> <li>• 회사내부 감시장치의 원활한 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식 감사위원회의 도입</li> </ul> </li> <li>•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강화</li> </ul>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능력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정착</li> <li>• 회계산업의 사전 규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임한도제 폐지 및 지정감사 범위 축소</li> <li>- 감사보수 자율화</li> <li>-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회계법인 감사</li> </ul> </li> <li>• 외부감사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대상 확대 및 공인회계사회의 peer review 제도 도입</li> </ul> </li> </ul>

수행하는 정부의 입장이 고려되는 등 독립성의 결여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기준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분식회계이며, 분식회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외부감사기능 및 벌칙이 약하기 때문이다.

셋째,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하여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공정한 감사의견 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실감사를 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기업회계기준의 개선방안, 회사의 분식회계처리동기 억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능력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실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개혁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 2) 기업회계기준의 개선

### 가. 기업회계기준의 체제 및 제정기구의 변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출범하였고 기업회계기준의 체제 및 제정기구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체제의 측면에서 종전의 광의의 기업회계기준은 크게 기준, 준칙, 예규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준에는 기업회계기준, 건설업회계처리기준, 리스회계처리기준 등이 있었다. 헌법적 성격의 기업회계기준 외에 하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별회계처리기준이 동일한 위상의 기준으로 명명되어 있어 이들 기준들은 하부 규정의 성격인 준칙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예규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정비에 따라 기준에 포함할 내용들 및 신설 기준과 상치되는 것들은 폐지하는 등 대폭 정비하고 그 명칭을 해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제정기구는 종전에 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하고 재경원장관이 승인하며, 준칙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하며 재경원장관의 승인절차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규는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감독기구의 통합이후에는 업무의 원활화 및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기준의 경우 재경원장관의 승인절차는 생략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절차를 변경하였다. 준칙과 해석에 대하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상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기업회계기준체제의 변경(금감원 발족 — 한국회계연구원출범 이전)

종전		이후	
구분	제정권자	구분	제정권자
기업회계기준	증권위제정 재경원장관승인	기업회계기준	증권위 심의 금감위 제정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상동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증권위 제정
리스회계처리기준	상동	리스회계처리준칙	상동
연결재무제표준칙	증권위제정	연결재무제표준칙	상동
합병회계준칙	상동	합병회계준칙	상동
반기재무제표준칙	상동	반기재무제표준칙	상동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상동	삭제(해석으로 전환)	상동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예규	증권위위원장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증권위위원장

한편 회계기준제정의 주무기관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종전의 회계관리국이 1999년 회계감독국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회계감독국이 기업회계기준의 실질적인 제정과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회계기준의 제·개정에서 사전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1981년에 기업회계자문위원회를 개편한 회계제도자문위원회를 1998년에 회계기준심의위원회로 재차 확대 개편하였다.

#### 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금융감독위원회는 IMF, 세계은행 및 회계기준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1998년 12월 11일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기준 개정의 주요 방향은 가능한 한국회계기준(IAS)과 일치시키며, 완전하고 투명한 재무공시를 추구하고, 효율적 자본시장을 근거로 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전까지의 회계기준 개정은 국제적 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반면, 이번 개정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을 전폭 수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 처리
- ② 자산재평가 인정조항의 삭제
- ③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범위 확대 및 채권·채무재조정 의무화
- ④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 의무화
- ⑤ 자산평가기준의 적정화
  -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을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외에 투자자산 및 무형자산 까지 확대
  - 자산의 감액회계 도입
  - 유가증권평가기준으로 공정가치개념 도입
- ⑥ 손익인식기준의 보완
  - 단기용역매출·단기예약매출의 수익실현기준을 인도기준에서 진행기준으로 변경
  - 영업외손실(영업외이익)에 반영하던 매출할인(매입할인)을 매출액(매입액)에서 차감
- ⑦ 재무제표상 자산·부채의 적정 표시
  - 매출채권의 양도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혹은 차입거래로 분류
  - 이연자산 폐지하고 연구비는 비용으로 개업비중 일부와 창업비,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분류
  - 사채발행비 및 신주발행비는 관련 사채나 자본의 평가계정이나 조정항목으로 처리
  - 전환권가치 및 신주인수권가치의 분리 인식하지 않음
- ⑧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소급법으로 변경
- ⑨ 재무제표의 주석 공시의 강화
  - 우발상황 및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시
  -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
  - 사업부문별 및 중단된 사업부문에 관한 정보 공시

#### 다.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의 제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IMF 및 세계은행과의 협약사항 그리고 정부의 재벌기업과

의 협약사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1998년 10월 21일 결합재무제표준칙을 제정하였으며 1999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30대 그룹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업영위 회사를 포함한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만,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의해 총자산의 80% 이상이 포함되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하였다.

②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결합재무제표로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결합자본변동표는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③ 투자거래와 내부거래 상계

계열회사간의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은 매수법을 적용하여 상계제거한다. 이때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 중 외부주주지분은 이를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과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원칙적으로 전액 상계제거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④ 주식공시사항

계열회사의 상호, 업종, 투자비율 등의 일반사항,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외에 내부지분을 현황, 계열회사간 상호 지급보증 현황, 결합대상계열회사간 상호자금대차관계, 매출·매입거래 현황 등 계열회사간 주요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1999회계연도에 5대 그룹을 포함한 17개 기업집단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삼성의 159개사 등 총 729개사의 경영현황이 포괄되었으며, 2000 회계연도에는 13개 기업집단의 총 625개사에 대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재벌의 경영현황을 공시함으로써 불투명한 경영관행의 해소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없이 도입된 데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 라. 금융업회계준칙의 제정

금융업의 회계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회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평가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금융업에 대하여는 일반 투자자를 위한 일반목적의 회계정보가 아니라 감독목적의 회계정보가 우선시 되었다는 점과 감독목적 회계처리규정이 금융기관의 경영실상을 왜곡할 수 있도록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각 감독기관에서 정한 은행·증권·보험 등의 감독회계규정 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필요한 일반목적 재무제표 관련 내용은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하여 증선위에서 일괄하여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한편,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 감독기관에게 필요한 감독목적 재무서류 관련내용은 감독회계규정으로 개선·유지하도록 하였다.

증선위는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맞추어 우선 은행·증권·보험업에 대한 회계처리준칙을 1998년 12월 10일 제정하였으며, 이어 1999년 3월 24일에 종합금융업과 증권투자신탁업 회계준칙을 1999년 6월 30일 상호신용금고업 회계준칙을 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에 충실하게 계정과목을 재분류 및 계정과목 개선
  - 종전에 부채로 계상하던 증권거래준비금을 자본(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적립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던 것을 순보험료식으로 하도록 통일하고, 종전에 당기비용화 하였던 신계약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던 것을 이연처리 하도록 하였다.
  - 생명보험사의 사업비(보험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중 이연처리하던 것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 ②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개선
  - 감독기관별로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유가증권의 평가기준을 기업회계기준과 일관되도록 통일하였다.
  -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기준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하도록 하여 결

산지침에 의한 변칙 운용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③ 지급보증충당금의 설정 신설

-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하여도 피보증인의 부실화 정도를 감안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④ 채권채무재조정 회계규정 신설

- 채권채무재조정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당기손실로 반영하도록 하고 새로운 준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산업합리화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

⑤ 손익인식기준 개선

-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손익인식기준을 규정하였다. 유가증권의 경우 매매관련 회계처리시점을 종전의 매매결제일에서 매매체결일로 변경하였다. 금융기관의 주 수익원인 이자수익에 대하여도 엄격한 실현주의를 적용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⑥ 주식공시사항을 강화

- 은행의 경우 자산, 부채의 만기일별 분석자료와 타은행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 고유계정에 대한 신탁계정의 잠재적 영향액, 증권사의 경우 역외펀드 투자에 관한 사항, 보험사의 경우 보험종류별 책임준비금의 변동내역 등을 주식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3)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기업회계기준서

가.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출범의 의의

IMF 및 세계은행의 SAL-II 협약에 따라 1999년 6월 30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회원인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출범하여 동년 9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 3/4분기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내부에 설치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를 통하여 회계기준 제정, 개정과 해석 및 질의회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출범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은 회계기준 제정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준제정의 기초 작업부터 공청회, 공개초안, 최종기준서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1천 여명의 인터넷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종전의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하였던 점은 회계기준이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제정되었는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회계기준의 수용성 및 이해가능성 저하로 직접 연결되었다.

둘째, 기준제정에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의 정부주도 시기에도 조직의 확대 개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등 전문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정부조직의 상대적인 경직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민간기구에는 그 존재 근거가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준제정과정의 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자유로운 참여는 제정기구의 전문성에 대하여 상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제정기구는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 나. 기업회계기준서의 제정

한국회계연구원이 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수립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sup>3)</sup>

첫째,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준거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다.

둘째, 준거기준의 수용정도와 관련하여 완전수용 및 부분수용보다는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기준을 국내기준으로 사용하되, 일부의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사용 또는 국내기준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하는 대폭수용방식을 채택한다.

셋째, 기존 기준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새로운 체제의 기준서, 해석서 등이 완성될 때마다 존 회계기준의 관련조항 등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넷째, 회계기준의 체제는 종전 기업회계기준, 준칙, 해석의 체제를 정비하여 기준서, 해석서, 기준적용사례의 체제로 전환한다. 기준서는 회계사안별로 기업회계기준,

3) 조장연, 기업회계기준 체계 개선 방안, 월간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0년 2월호

〈표 6〉 기업회계기준서의 주요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주요 내용
제1호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회계변경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 오류수정은 당기일괄처리법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오류는 소급법을 적용
제2호 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포함 중간재무보고의 인식 및 측정 기준 명확화
제3호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요건 강화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
제4호 수익인식기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배당금·로열티 등 대표적 수익거래 형태별로 수익인식기준 정교화
제5호 유형자산	복구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 대수선 지출을 별도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사건	재무제표 확정일을 이사회 승인일로 규정 재무제표일 후 배당결의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사건으로 규정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처리를 원칙으로 자본화 허용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 조정분만 금융비용포함 연체이자도 금융비용에 불포함
제8호 유가증권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손실회복을 당기이익으로 처리 유가증권의 양도거래와 담보차입거래 구분 기준 명시
제9호 전환증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가치 분리 인식 전환사채와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 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가치 분리 인식하지 않음 전환사채의 유도전환대가는 발행원가에서 차감
제10호 재고자산	개별법의 적용 조건 명시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로 평가
제11호 중단사업	사업중단과 관련한 예상비용을 인식 손익계산서에 중단사업손익 구분 표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건설업뿐만 아니라 유사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 수주비는 선급공사원가에 포함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공사원가의 즉시 비용 처리

준칙, 해석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내용을 통합·정리하여 해당 회계사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회계지침을 제공한다. 해석서는 기준서가 포괄하지 않는 세부 실행지침, 기술적 문제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하며, 기준적용사례는 기준서와 해석서 공표 이후 실무적용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질의 및 회신 중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공표한다.

기존의 법조문 형식으로 구성된 회계규정의 경직성 및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준서의 경우는 국제적 기준들과의 형식상의 정합성 제고와 실무적 적용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보고서 형식의 문단(paragraph) 구조로 전환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재까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서 및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 4) 회사의 분식회계처리 동기 억제

##### 가. 주주의 권한 강화

분식회계처리를 포함한 주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장치로서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의 상법7차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제안제도를 신설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 또는 의안)을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둘째,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이사의 선임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사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소수주주권의 강화를 통하여 주주들의 효율적 경영감시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의 당사자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서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였다.

나. 이사의 책임강화

주주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상법 7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에겐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였다.

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1999년 12월의 상법 9차 개정에서는 이사회 내에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되 위원 3분의 2이상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대형증권회사와 대형 상장법인(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은행법도 2000년 1월 21일의 개정을 통하여 모든 은행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미국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제도를 수용하여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게 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엄정성을 도모하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감사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및 보수의 결정,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하여 그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감사인에 의한 재무감사를 충실하게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반하여 개정상법상의 감사위원회는 이 위원회가 감사의 주체로서 직접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2001년 8월 14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sup>4)</sup>에서 기업 내부의 회계환경 개선을

---

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액 합계 500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회계장부의 작성·보고 및 변경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구비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 ①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③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 ④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 및 훼손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 ⑤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상근이사 중에서 지정된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와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마.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및 책임강화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범규의 개정이 있었다.

첫째, 감사인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종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다('98년 외감법 7차개정). 또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으로 부실

---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일명 워크아웃협약)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법제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 5년간(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감사를 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1년 공인회계사법 10차 개정).

둘째, 부실감사를 예방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에는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그 위반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1년 외감법 9차 개정).

셋째,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연간적립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동 기금의 적립금 총액을 3개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평균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여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였다. 공인회계사 개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종전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2001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넷째, 기업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대상 서류에 허위의 기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고 5억 원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0년 3월 28일에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하였다.

## 5)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능력제고

### 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제고

첫째, 대주주의 압력 배제 등 공정한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1998년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제도화 하였다. 상장회사와 결합대상계열회사는 내부 감사 2인 이내, 사외이사 2인 이내, 제1대주주를 제외한 제2, 3대주주, 제1, 2채권자(최대 8인 이내)로 구성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동 위원회는 주주총회의 감사인 선임결의 시 감사인 제청을 담당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실효성 미흡에 대응하여 2001년 외감법 9차 개정을 통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감사인 선임시 종전 「감사인선임위원회 제청 → 주총승인」 절차를 「감

사인선임위원회 선임 → 주총 사후보고」 절차로 개선하였고 상장법인·결합대상계열 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기업을 Kosdaq 법인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사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둘째,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공정한 감사의견 제시보다는 회사의 압력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 외에 Kosdaq 법인의 경우에도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여 감사계약 지속을 위한 부실감사 압력을 해소하는 한편, 계속감사에 따른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이 동일기업을 6년간(상장법인 및 코스닥법인은 4년간) 계속감사 한 경우에는 감사책임자인 이사를 교체해야 하며, 3년간 계속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팀의 소속 공인회계사도 2/3 이상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하였다(2001년 외감법 9차 개정).

셋째,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사가 부당하게 감사인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2001년 공인회계사법 9차 개정).

넷째, 특수관계로 인한 감사 및 증명업무의 제한을 종전 공인회계사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서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감사업무 등의 대가로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한 경우로 대폭 강화하였다.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2001년 6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 나. 공인회계사의 자율 확대를 위한 능력제고

첫째, 공인회계사회의 자율감리권을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실시하던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가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회계감사기준의 제정권을 감독기구에서 공인회계사회로 이관하였다. 즉, 종

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던 것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셋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 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보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1999년 공인회계사법 8차 개정).

넷째, 감사인간의 적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임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다. 일차적으로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고(1999년) 이후 감사반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종전의 자산총액 30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 자산총액 500억 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하였으며(2000년) 종전에는 회계법인만이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반도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2003년에는 감사인의 수임제한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형금융기관에 대해서만은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중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존속시켰다.

다섯째,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및 폐업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최저자본금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하였다. 또, 법정 공인회계사수를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사원의 수를 5인에서 3인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회계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였다.<sup>5)</sup>

### III. 전세계적 회계부정 사건이후의 회계개혁

#### 1. 추가적인 회계개혁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외환유동성 위기가 진정될 무렵인 2001년 12월부터 시장경제의 최선 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우수기업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이 줄을 잇는 일대 파문이 일었다. 엔론에 이어 2002년 7월에는 월드컴이 회계부정의 적발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제록스, 루슨트테크놀로지 등에서도 분식회계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여파는 유럽과 일본 등으로 확산되어 비방디, ABB, 소니 등 각국의 우수기업에 대하여 분식회계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미국은 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즉시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하여 SEC의 최고책임자를 교체하고 별도의 회계감독기구 설치, 회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담은 Sarbanes-Oxley법이라는 회계개혁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sup>6)</sup>

우리나라에서는 대우, 기아, 한보 등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을 처리하는 후속작업과정에서 앞 장에서 정리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2001년을 '분식회계 근절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은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엔론사태에 이은 미국의 회계개혁방안은 세계 각국이 회계

5)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정비계획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설립을 자유화하여 복수공인회계사회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공인회계사회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복수화를 허용하여 회계감사 등 사업자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입강제제도를 폐지하고 임의가입제도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집단으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인회계사회의 설립을 자유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의무가입제도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부안을 수정하였다.

6)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WEF)이 '신뢰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업 신뢰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5개항'을 결의할 정도로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 정부도 2002년 11월 미국 회계개혁법을 준용한 회계제도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강도 높은 개혁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상당한 반발을 야기시켰지만 2003년 들어 세계 서열 5위인 SK그룹의 대표사인 SK글로벌의 1조 5천 억에 달하는 분식회계사건이 발발함에 따라 회계제도개혁안은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현재 관련법령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앞 장에서 정리한 회계개혁은 우리 회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회계투명성제고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회계불투명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직접적 규제조치도 포함하고 있지만,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제도 정비, 감사위원회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등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개혁의지를 유도하는 조치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에 따른 최근의 회계개혁은 거의 모든 면에서 자율보다는 강력한 직접 규제라는 데 특징이 있다.

본 장은 우선 우리의 회계개혁모델이 된 미국의 회계개혁법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 우리의 회계개혁방안의 추진 과정을 논의하기로 한다.

## 2. 미국의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

이 법은 미국 정부가 기업 회계와 공시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2년 7월 제정한 것으로 일부 규정은 바로 발효하였고 일부 규정은 SEC의 규칙 제정을 통해 발효하게 되는데,<sup>7)</sup> 미국 증권규제의 패러다임을 공시에서 직접 규제로 전환하였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그 파장이 실로 광범위 하고 다양하며 아직까지 미국의 법조계와 실무계에서는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은 규정의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한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법은 지금까지 주법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좁은 의미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회사법이 외국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8)</sup> 이 법의 주

7) 발의자는 미상원 th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위원장 Paul. S. Sarbanes 와 하원의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위원장 Michael G. Oxley이다.

8) 김화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증권시장 동시 상장, 스탠포드 법대 국제신포지움 자료, 2002년 11월.

요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Sarbanes-Oxley법의 핵심 내용은 회계감사분야의 포괄적인 감독을 담당하는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하였다는 것과 기업 내부적으로 외부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위원

<표 7> 미국 기업개혁법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독립적 회계감독기관인 회계감독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관련 기준 제정(감사조서 보존기간 7년 조항 포함)</li> <li>-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최소 3년에 1회 검사</li> <li>- 회계법인 및 그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제재</li> </ul>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감기업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 금지</li> <li>- 모든 감사 및 비감사업무 계약은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 필요하며 비감사업무 계약은 사업보고서에 공시</li> <li>- 5년 주기로 감사의 주 파트너 교체를 의무화</li> <li>- 감사인의 피감기업에 대한 취업제한</li> </ul>
기업의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기업 감사위원회 제도화</li> <li>-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와 CFO 인증의무화</li> <li>- 임원의 감사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분식회계로 인한 재무제표 수정 시 책임있는 임원의 1년내 상여금 및 기타보너스 박탈</li> <li>- SEC에 불법행위 임원 자격 영구박탈 청구권 부여</li> <li>- 연금펀드의 거래제한기간 중 내부자 거래 금지</li> <li>- 피해 투자자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fair fund) 설립</li> <li>- 기업임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대여금 금지</li> </ul>
기업공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보고서의 공시내용 확충</li> <li>- 기업 경영진 및 주요주주의 주식거래 공시 개선</li> <li>- 재무담당 고위간부에 대한 윤리규범 채택여부 등의 공시</li> <li>- 중요한 사항에 대한 즉시공시 의무화</li> </ul>
기업분석가의 이해상충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은행 업무종사자에 대한 자료의 사전배포 제한</li> <li>- 부정적 조사자료 발간 시 보복행위 금지</li> <li>- 브로커와 기업분석가 간 구조적 격리장치 설치</li> </ul>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변조 시 형사 처벌(기업 최고 20년 징역, 회계법인 10년)</li> <li>- 증권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장</li> <li>- 내부고발자 보복 금지(위반시 최고 징역 10년)</li> <li>- 증권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최고 25년 징역)</li> <li>-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li> </ul>

회의 기능 강화 그리고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미국의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rule-based approach를 따를 경우 편법적인 행위로 기준의 위배를 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principle-based approach를 따를 것을 권유하며 미국의 회계기준은 국제적인 회계기준 조화노력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3. 우리 나라의 회계개혁

정부는 미국회계개혁법의 제정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재경부·금감위·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회계연구원이 참여한 민관합동 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작업결과인 회계개혁안을 2002년 11월 발표하였다.

개혁안은 기업의 회계정보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투명회계 관행이 일선 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 근간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진, 내부회계 관리조직,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이 각자의 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개혁안은 미국의 「회계개혁법」이 앞으로 New Global Standard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 참고하였다.<sup>9)</sup> 이사회·최고경영진·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회계관련 공시제도의 강화, 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책임 강화,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 재무제표 확정기관 변경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혁안들이 제시되었으며 2003년 3월 25일의 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확정된 개혁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책임 강화

##### 가.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CEO 등의 인증 의무화

공개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표이사가 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회계공시자료의 중요사항에 허위표시가 있는 중대

9) 재경부 보도자료,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안, 2002년 11월 8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임직원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처벌이 곤란하며, 기타 임원의 경우 서명의무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개혁안에서는 Sarbanes-Oxley법과 같이 CEO 및 CFO가 공시서류 기재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회계개혁법의 취지를 따른다면 CEO의 인증 대상은 공시자료의 허위표시 여부인 결과뿐 만 아니라 공시자료의 생성 과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인증제의 실효성 의문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외감법 개정을 통해서 중요한 허위기재를 알고 서명할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 나. 공시서류 허위기재 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게도 민사책임 부과

상법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 부과 대상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업무지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법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유가증권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법상 배상책임규정과 는 별도로 증권거래법에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신설 명시하기로 하였다.

#### 다.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

주요주주·이사·임원 등이 대여금·지급보증 등을 통해 회사재산의 충실을 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법을 제외하고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증권거래법·외감법은 회사가 이들에게 자금대여시 공시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개혁법은 주택개량사업 관련자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 및 이사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최초의 정부 개혁안은 주요주주·임원 등에 금전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지는 않고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차입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비교 등 관련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

록 의무화하는 간접적인 견제장치의 마련이었다.

그러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감사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안이 채택되어 미국의 개혁법과 동일하게 금전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다. 국회재경위의 검토과정에서는 금전대여 등 금지대상을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공개기업의 경우 상설기관인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부규정(감사위원·감사의 전문성 요건 등)은 미흡한 상황이다. 즉, 감사(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비적격 요건만 규정하고, 전문성 요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유가증권시장규정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원 중 1인은 재무제표 이해능력이 있는 회계 및 재무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하는 등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앞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자산 70억 원 또는 여신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이 한시법(2005. 12. 31 소멸)이고 현실적으로 동 제도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공개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항구적으로 제도화하고 적용대상기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 현황 및 평가내용을 공시하는 등의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감법으로 이관하여 항구제도화할 예정이며, 감사의 이사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 평가보고 주기를 매사업연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하였다.

#### 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회계비리를 감사·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하고, 신분상 비밀을 보호(위반시 5년 이하 징역)하고 있으나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인장치가 미흡하다. 위반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 또는 타인에게 강요한 자는 신고해도 혜택 없는 등 신고자의 징계감면 요건도 지나치게 엄격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차단장치가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내부 신고자에게 보복할 경우 처벌(10년 이하 징역)하고, 해고 등의 경우 복권 등 구제 수단 마련하고 내부신고자에게는 민사제재금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회계비리신고자 보호제도를 외감법으로 이관하고,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보복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회계비리 신고 유인 제고를 추진 중이다.

## 2)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 · 적시성 제고

### 가. 공인회계사의 분기재무제표 검토대상 기업 확대

상시 회계감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대상을 확대하되 기업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자산 2조 원 이상인 88개 기업을 자산 1조 원 이상 134개 기업으로 우선 확대할 것이다.

### 나.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

현재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보충적 재무정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반기 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 이에 정부 최초 개혁안은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을 현행 사업연도 경과 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사업보고서 뿐 아니라 분·반기 보고서 제출 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의 기본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분·반기 보고서 제출 시의 연결재무제표 제출 의무화는 상당한 반대 의견에 직면해 있다.

### 다.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제도 보완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재무관련 사항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하고 감사증명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동의절차

없이 공시서류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책임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이 첨부되지 않아 공시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 본문에 재무제표 전문(주석 포함),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감사보고문 전문)을 기재토록 하고, 감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증명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라. 공시서류에 전문가의 의견 인용 시 서명 의무화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는 허위기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신용평가회사·주간사회사 외 전문가 의견 인용 시에는 증명 또는 서명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오도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인용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문가의 주장에 대한 민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미국·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신의 의견 인용에 동의한 모든 자에 대하여 서명(인용동의서 첨부)을 의무화하고, 민사책임을 부과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 마. 상장기업 등의 회계정보 공시강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공개기업과 그렇지 않은 비공개기업에 동일한 회계공시 기준이 적용하여 회계정보의 충실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기업에 대해 현행 발행 공시 규정보다 상세한 회계정보공시를 의무화(사업보고서 등 서식을 개정하여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 분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세부 공시서식 및 표준 재무공시사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 바.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방법 등 개선

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의 경우 현재 공정가액법 또는 최소가치법 중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조장 소지 및 관련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및 국제회계 기준의 제정 방향과 일관되도록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 및 비용처리를 의무화할 예

정이다.

#### 사.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되는 재무관련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승인절차를 거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한이 지연되어 시장으로의 정보흐름이 늦어지고 시장의 정보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재무제표상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수정재무제표의 공시가 곤란하여 차기 주총까지 잘못된 재무정보가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수정·확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우리와 같은 상법 국가인 일본의 경우도 감사위원회 설치기업은 이사회 확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등록법인의 재무제표의 확정은 이사의 결의사항으로 변경하고, 주총에 사후보고토록 하되 다만,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이 주주총회가 승인토록 할 예정이다.

#### 아. 증선위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확대

잠재적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의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은 분식회계 적발기업, 부당하게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 등이나 거래소·코스닥 상장·등록예정기업(벤처기업 포함), 코스닥기업이 관리종목 등으로 편입되는 경우로 확대할 예정이다.

### 3)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 강화

#### 가.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

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고수익 부가업무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 이해상충에 따른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에 대해 제한이 없고 다만, 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하여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개혁법에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기록과 관련된 용역 등 컨설팅

업무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상황에 따라 회계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업무 수행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서비스, 경영진의 기능 서비스, 내부감사기능의 총괄 대행 서비스 등 특정 컨설팅업무는 금지하고, 이해상충이 낮은 비감사 업무는 내부통제장치 등을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 확정안은 최초안과 비교할 때 겸임금지대상 컨설팅 업무가 현저하게 축소돼 분식회계 근절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특히 업무 비중이 큰 자산 및 부채의 실사 또는 평가업무가 겸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감사와 컨설팅의 분리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나.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

정부가 제시한 최초의 개혁안에는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미국 회계개혁법 중 외부감사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조치 중의 하나인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 의무화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SK글로벌의 경우 10년 이상 동일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감사인과 피감기업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국 회계개혁법은 5년간 계속 감사를 할 경우에 예외없이 감사의 주 파트너(lead or coordinating audit partner)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6년 마다 회계법인을 교체하도록 하였고 계속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 사항을 두었다. 첫

10) Sarbanes-Oxley법에서는 회계법인이 피감사회사(Audit Client)에게 동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피감사회사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Sarbanes-Oxley법에서 금지하는 비감사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장대리업무
- ② 재무정보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 ③ 가치평가, 거래·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제시
- ④ 보험계리서비스
- ⑤ 내부감사 지원서비스
- ⑥ 경영진의 기능 또는 인사업무 대행서비스
- ⑦ 브로커, 딜러, 투자자문 또는 투자은행 서비스
- ⑧ 감사와 무관한 법률서비스와 전문가 서비스
- ⑨ 기타 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하는 서비스

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모회사의 관계상 동일 회계법인의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와 둘째, 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이 허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뉴욕 및 런던 증권거래소 예정)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이다.<sup>11)</sup>

#### 다. 감사조서의 진실성 확보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재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기간(5년)을 회계감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서의 훼손·위변조·파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즉, 감사조서의 보존기간이 짧으며,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법률이 아닌 감사준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곤란한 상황이다. 미국은 개혁법으로 감사인은 감사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최소한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회계감독위원회가 제정하는 감사준칙에는 최소 7년 이상 보관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불이행, 위변조, 파기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불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감사조서 보존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고 조서의 훼손·위변조·파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외감법에 규정할 예정이다.<sup>12)</sup>

## IV. 요약 및 결어

이상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급박하게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회계개혁 방향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 단계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과정에서 행해진 회계개혁으로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미흡하였던 회계

11)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 방안에 대하여 대형 회계법인들은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반대의견이 반영되어 회계법인의 강제교체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위의 두 가지 외에 감사 위원회가 전원 동의한 경우와 공동감사(joint audit)의 경우도 검토 되었으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폐지되었다.

12) 감사조서의 보존기간은 정부 최초안은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었으나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7년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다. 단순히 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큰 부담도 없고 또한 심의기관에서 분식회계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실적으로도 집계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연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프라 구축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회계기준제정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분기재무공시제도의 도입, 감사인선임절차의 개선,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실시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세계적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응한 회계개혁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적 기능보다는 직접적인 규제를 통한 분식회계 동기의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CEO의 재무제표 인증 및 기업자금의 대출금지,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한 및 주기적인 감사인 교체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불과 5~6년 사이에 이렇듯 급격한 제도적 변화를 수용한 예는 흔치 않을 것이다. 외환위기와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의 발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회계개혁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회계개혁의 속도 및 추진과정의 문제이다. 첫 번째 회계개혁은 외환유동성부족을 해소해 준 자금공여기관의 직접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의 회계개혁은 SK글로벌 사태를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으로 연계시켜 미국의 회계개혁법을 거의 수정없이 수용하였는데, 이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시차없이 쫓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바탕을 둔 과도한 조치라고 할 만하다. 이미 첫 번째 개혁을 통해서 건전한 회계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미국에서 조차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행착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자본시장 자체가 붕괴될 극단적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신뢰성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극약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과연 SK글로벌 사태가 미국과 동일한 정도로 즉각적인 처방이 필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회계개혁안을 입안하고 실행하게 될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뿌리깊은 정경유착과 그에 따른 정치적 비자금의 조성 압력이다. 본고에서 살펴 본 회계개혁안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정치권의 분식회계 조장 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없다. 더구나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당국의 개혁의지도 매우 박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회계분야에 있어서의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도입의 논의가 시작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주무부서의 추진의지 미흡으로 답보 상

태에 있다. 분식회계를 방지하여야 할 금융감독기관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를 출범에는 반대하고 도리어 인력과 예산의 확충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미 민간기구로 위탁한 회계기준의 제정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환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 및 정책당국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수반되지 않은 개혁안의 수용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급격한 회계개혁안이 회계분야에 누적된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반증하는 것이지만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대정부 로비력이 타 전문가집단에 비하여 현격하게 떨어진 결과라는 자조적인 평을 내기도 한다.

셋째, 회계개혁안이 지나치게 처벌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개혁안의 제정 취지에서는 기업, 감사인, 제정기구, 감독기구가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정비한다는 원칙이 천명되어 있지만, 실행안에서는 처벌과 규제라는 부정적 도구만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처벌과 규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불투명한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모두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과 규제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거의 관행이 답습되는 한 개혁안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대사면 논의는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왕의 회계개혁안이 효과적으로 실행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이고 미봉적 처방인 직접적 규제보다는 회계산업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분식회계는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과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경영 윤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적발 및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사회적 포상이 부여되는 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최근의 회계제도개혁논의에 대한 소고, 2002년 정책자료집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자료. (2003) 회계제도개혁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2002-2, 2002. 12) 미국 회계개혁법, 조사자료.
- 나인철, 정문종. (2002) “회계투명성과 향상방안”,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심포지엄 자료, 한국회계연구원 · 한국회계학회.
- 이정호 외 4인. (2002) 한국회계제도발달사, 금융감독원 정책연구보고서.
- 장지인, 김완희, 김경호. (2002)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과 기업가치”, 「기업투명성과 기업가치」심포지엄 자료, 한국회계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증권연구원 · 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 ·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공동주최.
- 장지인, 배길수, 전영순(2002)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재조명”,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심포지엄, 한국회계연구원 · 한국회계학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3)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법률 개정안 등 재경위 통과.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3)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법률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조장연. (2002) 기업회계기준 체계 개선 방안, 월간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2003) 회계편람.

## The Review on Changes in Accounting After Foreign Currency Crisis

Jhongho Lee\*

Wanhee Kim\*\*

### ABSTRACT

Korea underwent unprecedented changes in accounting sector after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Following the request of IMF and Worldbank, the primary providers of foreign loan, we accepted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established private standard setting body and introduced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quarterly financial reporting, audit committee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fter Enron crisis, Korea adopted the core provisions of Sarbanes-Oxley Act including CEO certification to annual report, auditor rotation, and limit on non-audit business. This paper summarizes the process of these revolutionary changes in accounting and examines their implication. We suggests long term directions for sound development of Korea accounting industry. First,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not to adopt unverified foreign system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Secondly, political sector and government body try to lead the way to accounting transparency. Thirdly, regulation body need to overcome penalty based approach and must maintain fairness in punishment. Fourthly, we prepare infrastructure for facilitating market system rather than introduce temporary regulations.

Key Words: Accounting Transparency, Accounting Changes, Sarbanes-Oxley Act, IMF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e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nd Management

